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광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(시행규칙 제22조의2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,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*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('26.8.11.)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마련하려는 것임.

* 단,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부장관의 허가 시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

나. 개정 내용

-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허가 신청 및 허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. (안 제22조의2)
- 이에 대한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을 신설함. (별지 제30호의2, 제30호의3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노천채굴이 제한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가능(규제완화)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